#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56

발의연월일: 2021. 2. 5.

발 의 자:이헌승·홍석준·이종배

서병수 · 백종헌 · 임이자

이양수 · 송석준 · 박성민

박수영ㆍ허은아ㆍ최형두

김성원 · 하태경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하시설물로 인해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각종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는데,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지하시설물의 경우와 달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,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, 지반침하는 한번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, 발 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시장·군수·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, 지하개 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 관이 주변 지반의 보수·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, 지반침하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 및 제45조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 제목 중 "지반침하"를 "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국토교통부장관(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을 "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 한다.

제7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 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·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(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.
- 제5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10.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56조제3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6의2.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8조(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 제38조(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 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시장· 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 군수·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| 전조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-----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 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·금지하 거나 보수·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 다.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 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토교통부장관(시장·군수·구청장 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야 한다.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말한다)-----.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·군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 수·구청장-----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

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 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·

제45조의2(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·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(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 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

제54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(생략)

제56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16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17. (생략)

④ (생 략)

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
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
여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.
제54조(벌칙) ①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안
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
<u>한 자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56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1. ~ 16. (현행과 같음)
<u>16의2.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</u>
하여 안전조치명령의 이행
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
17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